

## 4. 검토요지

현행 서울사랑시민상은 봉사부문 등 8개 부문별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부문별 대상, 본상, 장려상이 있고 시민대상 총원은 223명, 시상금액은 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, 본 개정안은 시상대상 총원 235명, 시상금액 8억 6천 1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가. 안 제2조 제1항 6호(시상부문 및 인원) 신설

-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에 대하여 봉사·문화·환경·복지 등 8가지 분야 부문 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주의 실현이나 여권을 신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
- 시상인원은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고 대신 본상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조정하였고, 복지부문에는 다른 부문의 시상인원을 고려하여 대상 1명, 본상 2명, 장려상 3명으로 하여 총 6명으로 하였으며
-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대상은 양성평등·사회참여·경제활동·보육·건강가정 등 5가지 세부분야 유공자에 대해 대상 1명, 본상 2명, 장려상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.

## 나. 안 제4조 제1항 4호(시상방법 및 시기) 개정

- 복지부문 시상방법과 시기를 복지자원봉사·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(9월 7일)와 장애극복자 분야로 세분하여 장애인 시상은 장애인 주간(4월 20~4월 26일)에, 또한 여성부문 시상은 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,

## 다. 안 제9조(시상금 등) 별표의 개정

- 문화부문의 시상금 중 본상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상금액과 같게 한 것은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통합조례 제정 당시 수정의결안에 반하고 또한 시상금액을 종류별로 차등 구분한 의미가 없음.

## ※ 현행 부문별 시상금 내역

(단위:천 원)

부문별	종류별			비고
	대상 (11명)	본상 (57명)	장려상 (155명)	
봉사부문	12,000	7,000	5,000	
문화부문	10,000	7,000	-	
환경, 복지, 교통, 건축, 토목부문	10,000	5,000	3,000	

##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,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## 6. 여성부문

제4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,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4. 복지부문

가. 복지자원봉사·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: 9월 7일

나. 장애극복자 분야 : 장애인주간(4월 20일~4월 26일)

## 6. 여성부문 : 여성주간 (7월 1일 ~ 7월 7일)

별표 1중 문화부문의 대상란 “1”을 삭제, 본상란 “13”을 “14”로 하고, 복지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란 다음에 여성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계의 계란 “223”을 “235”로, 대상란 “11”을 “12”로, 본상란 “57”을 “62”로, 장려상란 155“를 ”161“로 한다.

복지부문	10	1	3	6	3개 분야 (복지자원봉사, 후원자, 종사자)
	6	1	2	3	1개 분야 (장애인복자)
여성부문	6	1	2	3	5개 분야 (양성평등, 사회참여, 경제활동, 보육, 건강가정)

별표 2중 문화부문의 대상란 “10,000”을 삭제하고, 본상란 “7,000”을 “10,000”으로 하며,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란 다음에 여성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여성부문	10,000	5,000	3,000	
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	--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